

# 쌀협상 결과 및 국내대책



정일정 서기관  
(농림부 국제협력과)

## I. 쌀협상 결과 주요내용

### 1. 쌀협상 추진경과

**< UR 협상 결과 >**

- 쌀에 대한 관세화를 10년간 유예 받았으며 국내 소비량의 1~4%에 해당하는 저율관세물량(TRQ) 의무 수입
  - \* ('95년) 51천톤(1%) → ('04년) 205천톤(4%)
- '05년 이후 관세화 유예 지속여부는 '04년 중 협상하며, 연장시 이해관계국에 대해 추가적이고 수락 가능한 수준의 양보 필요

- 협상개시의사를 WTO에 통보('04.1.20)하고 관계 부처 합동으로 “쌀협상대책실무추진단(T/F)” 구성 ('04.3.16)
- 재경부 · 외교부 · 농림부 등 관계부처 참여
- 9개국\*이 참여의사를 표명하였으며, '04.6월 중순 이후 미국, 중국 등 주요국 중심으로 관세화 유예를 위한 본격 협상을 진행
  - \* 미국, 중국, 태국, 호주, 인도, 파키스탄, 아르헨티나, 이집트, 캐나다
- 미국 9차, 중국 8차, 태국 6차, 기타 국가는 3차례 이상 협상 추진

- ※ 미국과는 실무급 협상내용을 확인하는 장관급 회담 개최('04.12.16)
- 협상상대국 소재 대사관, 제네바대표부 등 범정부적인 협상력을 총동원
- 주요국들과 실질적인 협상내용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우리나라 이행계획서(C/S) 수정안을 WTO에 통보('04.12.30)

### 2. 주요 쟁점별 협상결과

#### 1) 관세화 유예 연장기간

-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 연장하며 이행 5년차인 2009년도에 다자간 이행상황 중간 점검을 실시
- 이행기간 중 우리 필요에 의해 언제든지 추가 부담 없이 관세화로 전환 가능
  - 관세율 : WTO농업협정과 DDA협상 일반원칙 적용
  - TRQ물량 : 관세화 전환 당시의 물량수준을 유지 하되, DDA협상결과에 따른 TRQ물량이 높을 경우에는 DDA협상결과 물량 적용

#### 2) 저율관세물량(TRQ) 증량

- 2004년 205,228톤('88~'90년 소비량의 4%)에서 2014년 408,700톤(7.96%)까지 매년 균등 증량

※ 참고 : 일본쌀(6년, 8%), 대만쌀(1년, 8%), 한국쌀(20년, 8%)

### 3) 수입방식 및 TRQ 용도

- 수입방식은 현행과 같이 전량 국영무역 방식 유지
- TRQ는 가공용과 밥쌀용으로 판매
  - 밥쌀용 비율은 초년도 10%에서 6년차에 30%까지 균등 증량한 후 10년차까지 30% 유지

### 4) TRQ의 수출국간 배분

- 기존물량(205,228톤)에 대해서는 국별쿼타를 설정하고 향후 증량분은 최혜국대우방식으로 운영하는 이원적 접근법 적용
  - 기존물량(205,228톤)은 '01~'03년 수입실적을 반영하여 4개 국가에게 국가별 쿼타 부여
    - ※ 중국 116,159톤, 미국 50,076톤, 태국 29,963톤, 호주 9,030톤
    - ※ 국별 쿼타는 유예 종료시 최혜국 대우방식의 Global Quota로 전환
  - 신규물량(증량분)은 최혜국방식으로 운영하되 특수용도 쌀의 수요충족을 위해 제한된 양 별도 구매
- TRQ의 입찰방식을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운영

### 5) 기타 양자현안 등

- 일부 협상국들은 쌀 이외 농축산물의 검사·검역 등을 포함한 양자 현안문제도 제기하였으나 별도 양자 협의를 통해 논의하기로 결정

#### 〈관세화 유예 협상결과(요약)〉

- ◇ '05~'14년 10년간 TRQ를 현행(205,228톤)에서 408,700톤(7.96%)로 균등 증량
- ◇ 국영무역방식을 유지하되, TRQ의 10%~30%(6차년도 이후)까지 밥쌀용 시판 단계적으로 확대

## 3. 향후 추진계획

### ■ 협상결과의 WTO 검증

- 작년말 통보한 이행계획서 수정안은 WTO 검증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며 검증과정에서 일부 회원국들의 이의 제기가 있을 수 있음
- 이번 통보내용 이행과 관련한 기술적이고 절차적인 사항과 양자차원의 부가적 사항에 대해서는 검증기간 동안 협의를 계속하여 국가별, 쟁점별 합의 사항이 문서형태로 별도 작성될 예정

### ■ 국회의 비준동의 추진

- 이번 쌀협상이 UR의 후속협상임에도 불구하고 쌀의 관세화 유예 연장이라는 주요내용 변화가 있기 때문에 국회의 비준동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행계획서 수정안에 대한 국회의 비준동의 추진 예정

### ■ 쌀농가 소득보전방안 및 양정제도 개편방안도 그동안의 의견수렴 등을 바탕으로 국회 논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

## II. 쌀농가 소득보전 및 양정개편 방안

### 1. 쌀산업의 여건 및 전망

#### ■ 쌀협상/DDA 협상 이후 시장개방폭 확대는 불가피

- 쌀협상에서 관세화 유예 연장의 대가로 시장접근 물량(TRQ) 증량, 10~30% 소비자시판 실시
- DDA협상 기본골격은 관세와 국내보조 수준이 높을수록 더 많이 감축하도록 하여 시장개방폭은 앞으로 더욱 확대될 전망

#### ■ 국내적으로 생산에 비해 소비감축 속도가 더 빨라 공급과잉기조가 지속될 전망

- 쌀협상/DDA협상 이후 쌀산업 연착륙을 위해서는 수입증가·가격하락에 대비한 사전제도 정비 필요

- 쌀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국내외 가격차 축소가 불가피하고, 보조금감축 등으로 가격지지 정책은 직접지불제로 전환 필요
- 현재의 쌀관련 직접지불제와 추곡수매제로는 쌀값하락에 따른 농가소득안정에는 한계가 있을 전망
- 논농업직불제는 환경보전직불제로 분류되어 지급 단가 인상이 곤란
- 쌀소득보전직불제는 지속적으로 쌀값이 하락할 경우 보전수준이 미흡할 가능성
- 추곡수매제는 WTO보조금 감축으로 그 기능이 크게 위축되었으며, 쌀소득보전직불금 지급시 더욱 위축될 전망
  - WTO 보조금(AMS) 감축으로 수매량은 '95년 955만석(생산량의 29%)에서 '03년 521만석(생산량의 17%)으로 크게 감소

## 2. 「쌀소득보전직불법(안)」 주요내용

- 농림부장관은 농업인등(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포함)의 소득안정시책을 강구토록 함
- 쌀값의 목표가격을 정하고 산지쌀값이 하락할 경우 목표가격을 기준으로 보전
  - 목표가격은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며, 3년 단위로 변경
  - ※ 목표가격은 ① '01~'03년 산지쌀값, ② 추곡수매제 직접소득효과, ③ '03년 논농업직불을 감안하여 170천원/80kg으로 결정, 3년간 고정
- 쌀소득보전직불금은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으로 구분하여 지급
  - 고정직불금은 WTO규정상 허용보조 요건에 맞도록 타작물 재배 및 휴경하는 경우에도 고정금액을 지급
    - 다만, 농업인에게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의

무 부과

- ※ 고정형직불 : 쌀값하락과 관계없이 60만원/ha(진흥·비진흥지역 평균) 지급
- 변동직불금은 목표가격과 당년쌀값 차이의 100분의 80에서 고정직불금을 차감한 금액을 쌀생산 농업인등에게 지급
  -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의 산정기준 등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함
  - ※ 변동형직불 : 목표가격과 당년 산지쌀값과의 차액의 80%가 고정형직불금보다 클 경우 추가 지급

### 〈 쌀값이 5% 하락할 경우 직불금 지급(예) 〉

#### ◆ 농가의 실제 수입은 목표가격의 98.2% 수준 ◆

- 정부로부터 받는 직접지불금(고정형·변동형직불) : 12,450원/80kg
- 농가 시장에 판매한 쌀수입 : 154,508원/80kg
- \* 고정형 9,836원 + 변동형 2,614원 + 쌀판매수입 154,508원 = 166,958원/80kg ⇒ 목표가격 170.070원의 98.2%

- 쌀소득보전직불금 지급대상농지는 1998년 1월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로 함
- 논농업직불제의 면적상한 및 쌀소득보전직불제의 농업인 납입금 제도 폐지
- 쌀소득보전직불금 지급 대상자는 농림부장관에게 등록토록 함
  - 논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법 시행후(공포한 날부터 3월이후) 6개월 이내에 등록신청서 제출
-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농가소득안정심의회를 설치
  - ⇒ 소득보전방안의 제도적 실현을 위한 「쌀소득보전

직불법(안)을 마련하여 국회 제출( '04. 12. 29)

### 3. 양정(糧政)제도 개편

- WTO보조금이 감축되고 소득보전방안을 제도화할 경우 시장가격지지와 비축기능을 담당해 온 추곡수매제의 제도전환 불가피
  - 수확기 물량흡수 및 비축기능 유지를 위해 공공비축제 도입
    - 공공비축제(600만석 수준)는 시장가격으로 매입·판매
  - 목표가격에 추곡수매 효과를 반영하고 국회동의제는 폐지
  - 양곡의 유통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표시기준을 강화하고, 허위표시를 금지하며, 양곡 부정유통에 대한 벌칙을 강화
    - 양정제도 개편을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을 추진 (11.9, 국회제출)
- 미국종합처리장(RPC)을 혁신하여 민간 쌀 유통기능을 강화
  - RPC를 중심으로 품종·재배방법을 통일하고 공동브랜드 마케팅 유도
  - 건설한 RPC의 건조·저장시설 확충으로 수확기 처리능력 향상
    - 건조저장능력 : ( '03) 640만석 → ( '10) 1,100만석 수준(유통량의 70%)
  - RPC경영평가 및 통합 RPC에 대한 시설·운영자금 우대지원
- 안전한 고품질 쌀 생산·유통을 통한 소비자의 신뢰 확보
  - 미질(米質) 고급화 노력 강화 및 친환경 농업 육성
  - 품질 평가 확대 및 표시제도(품종, 도정일자 등) 이행 상황 점검

- 쌀소비감소 추세를 완화하기 위해 쌀소비촉진대책 지속 추진
  - 젊은 층, 주부 등을 겨냥한 TV광고 등 홍보사업 전개
  - 쌀 가공기술 개발 및 상품화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

### III. 농가 경영안정 및 복지 지원시책

- 쌀 시장의 개방확대로 인한 농업인의 불안감을 덜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각종 경영안정 및 복지 지원시책 확충
  - 조건불리지역직불제, 친환경축산직불제를 조기 정착시키고 '05년부터 경관보전직불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중장기적으로 현재 농가소득의 2%수준인 직접지불금을 '13년에는 10%까지 확충
  - 농작물재해보험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예상치 못한 대규모 재해 발생시 국가가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국가재보험제도를 금년부터 도입
    - '13년까지 농작물재해보험의 대상품목을 현재 6개 품목에서 쌀을 포함한 30개 품목으로 확대
  - 농가 영농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농업용 면세유류의 공급기한을 당초 '05년말에서 '07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추가 연장
    - 친환경농자재 중 천적, 키토산, 목초액 등 3종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여 고품질 친환경농업의 확산
- 농촌의 교육, 복지여건을 확충하기 위해 범정부적 협력을 통해 「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5개년 기본계획」을 수립·추진
  - 농특세 재원을 활용하여 농업인 건강보험료를 40% 경감하고 점차 50%까지 경감율을 확대하며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도 상향조정
  - 고교생 학자금 지원대상은 전농가로 확대하며, 영유아 자녀 양육비 지원농가도 2ha까지 상향조정하고 농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지원도 4만명까지 확대